# 입찰기초 공부하기!!

㈜ 인포스 www.bidq.co.kr

“입찰정보” 분야의 선구자입니다.

# [비드큐] 입찰기초 공부하기!

1) 전자입찰의 사전준비

2) 전자입찰 참가등록 방법

3) 입찰과 낙찰의 이해

4) 적격심사와 참가범위

5) 실적관리

6) 공동도급 및 기타 참가자격

7) 기타 주의사항

## 1. 전자입찰이 무엇입니까?

<Tip >

- PC환경 - 최소사양
- IBM 호환 PC - 듀얼코어
- 메모리 1GB 이상
- Microsoft Window XP 이상
- MS Internet Explorer8 이상

- PC환경 - 권장사양
- IBM 호환 PC - 코어 i3
- 메모리 2GB
- Microsoft Window 7
- Internet Explorer 10
- 해상도 1920*1080 에 최적화 되어있다.

### [전자입찰시스템 소개]

- 입찰이란?

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들에게 각자의 낙찰희망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일

- 전자입찰이란?

직접 입찰장소에 방문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물품조달 또는 시설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방식을 말한다. 2000년 11월 조달청이 처음 도입한 이후 각급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은 2002년 9월부터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공고를 게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 전자입찰시스템은 정부전자조달(G2B)시스템의 전자조달처리 업무 중 입찰공고부터 낙찰자선정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 공공기관의 입찰집행관은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공고를 작성하고, 업체의 입찰서를 전자적으로 접수하여 자동 개찰을 수행한 후 낙찰자선정을 할 수 있다.

- 또한 복수예비가격 생성의 자동화 및 암호화처리 기능을 지원하고, PQ심사 및 적격심사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 나라장터(www.g2b.go.kr)이다.

## 2. 입찰참가를 위한 사전준비사항은?

<Tip >

❖ 입찰참가 참가자격

1.기본요건

- 당해 건설공사관련 인·허가, 면허, 등록 등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훈령)에 따라 등록을 필한 자(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

2. 구체적인 요건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 참조

업종별 해당 협회를 활용하기 바란다.

협회에서는 실적관리, 경영상태, 시공능력공시 등 입찰에 필요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나라장터에 해당자료를 등록 송신하여 회원들의 원활한 입찰을 돕고 있다.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③항 제1호에 의거 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게 되었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사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종(예 :토목, 전기)을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 등을 마쳐야 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자(조달청)가 지정한 공인 인증기관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중 택일)을 방문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3. 업종별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미 공사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라도 면허를 추가 취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전자입찰을 하고자 할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협회 정보이용 ◈

- 대한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 한국전기공사협회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 한국소방공사협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 3. 전자입찰의 시작과 등록은?

<Tip >

❖ 인증서 신청에서부터 나라장터 등록까지, 입찰의 준비 절차는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 된다.

[나라장터 신규 업체등록 절차]

1. 법용인증서(유료)발급 [업체 스스로 발급]

◦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하여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지문보안토큰" 구매안내:**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지문등록"을 해야하므로, 인증서를 구매할때 지문보안토큰까지 동시에 구매하시기 바라며 구매하신 후에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을 출력한 후 우선보관하여야 함.

2. 조달업체 등록 신청 [업체 -> 조달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만을 입력한 후 송신 =>"시행문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에 나오는 안내내용에 따라 "시행문"과 관련 제출서류 "를 해당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제출(등기우편 가능)

<중요> 지문등록 안내 :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해야 하므로 지문등록 하실 분은 방문시
①지문보안토큰 수령증(또는 구매확인증)과
②신분증을 각각 필히 지참 요망

* '제조물품'을 등록할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대상물품 여부를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먼저 확인 필요

3. 등록승인 [조달청(고객지원센터)]

◦ 송신한 관할지방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서 제출서류 및 송신내용을 확인 후 승인

*승인여부를 확인하는 메뉴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메뉴

4. 인증서 등록 [업체 스스로 등록]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

## 4. 신규업체 인증서 신청과 등록방법은?

<Tip>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자인증서와 지문인식토큰 신청이다.

❖ 인증서 발급기관
-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 코스콤(www.signkorea.com)
-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

❖ 비드큐 메인 화면 오른쪽 배너를 클릭!

## [인증서 발급절차]

1. 공인인증 서비스 신규 신청서 원본1부
   대표자 제출시: 대표자의 자필서명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장석 및 개인(대표) / 법인 임감증명서 동일 인감도장날인

2. 사업장등록증 사본1부

3. 대표자신분증 앞 /뒤 사본1부(원본지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앞/뒤 사본 1부(원본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구 운전면허증 불가), 여권

4. 대리인 신청 시 법인인감증명서 원본1부(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대표자2인 이상 하업자 추가 제출서류
   공동대표: 신청서에 모든대표의 인감날인(인감증명서상 동일 도장날인),
   모든 대표의 인감증명서 원본, 모든 대표의 신분증 앞/뒤 사본
   각자대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용 1부 첨부

## [인증서 구비절차]

1.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2. 서류접수처에 직접 방문한다.
3. 대면확인 후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4. 발급메일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 (방문 당일 발급가능)

## 5. 인증서의 발급과 등록 절차

<Tip>

• 전자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인증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 갱신을 하여야 하고, 유효기간 경과 시에는 신규발급절차에 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유효기간 만료 30일전부터(고객 PC 설정시간 기준) 잔여일수 안내 메시지가 화면에 안내되고 있으니 가급적 만료 2주전에 미리 조치하시기 바라며 재발급 절차는 신규 발급신청 및 등록절차와 같다.

[조달업체 등록 업무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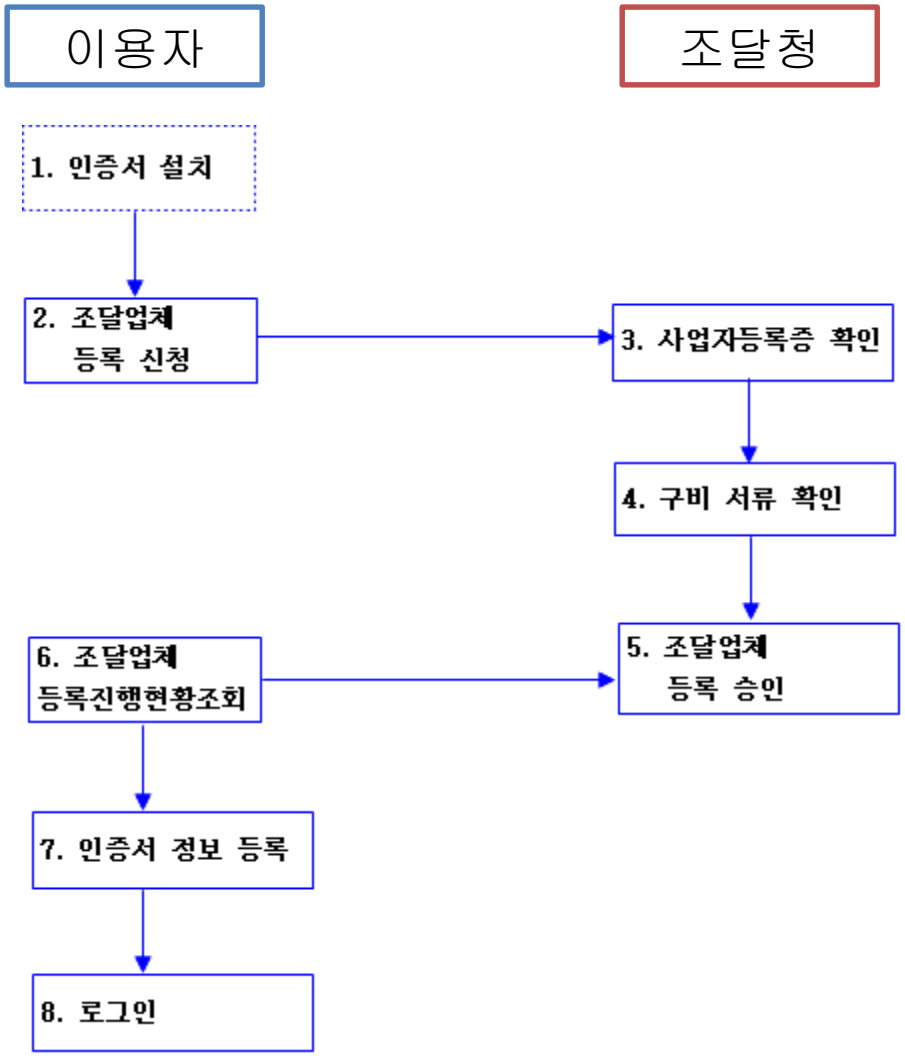

# [비드큐] 입찰기초 공부하기!

## 2) 전자입찰 참가등록 방법

6-1.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방법은?

6-2. 필수/추가 등록기관 상세안내

6-3. 필수등록 기관 상세안내

7. 분야별 등록신청서 입력사항

8. 전자입찰 전체업무 흐름도

## 6-1.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방법은?

<Tip>
1.공인인증서를 신청하였다면,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다음의 기관은 별도로 추가 등록해야 한다.
(서류제출은 없음)

- 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한국마사회 http://ebid.kra.co.kr
- 한국수자원공사http://ebid.kwater.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ebid.lh.or.kr
- 한국전력공사 http://srm.kepco.net
  (서류제출 필요)
- 국방전자조달 http://www.d2b.go.kr
- 한국수력원자력 http://ebiz.khnp.co.kr
- 한국도로공사 http://ebid.ex.co.kr
- 인천국제공항 http://ebid.airport.kr
- 한국철도공사 http://ebid.korail.com
- 한국철도시설공단http://ebid.krnetwork.or.kr

1. 나라장터 접속 http://www.g2b.go.kr/
2. 이용자등록 클릭

3. 조달업체이용자 클릭

4. 등록을 완료하면 시행문을 출력하여, 구비서류와 가까운 조달청에 제출한다.
(우편 접수 가능)

5.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다.

6. 구비서류 공통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업 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

7. 승인이 나면 입찰의 시작이 가능하다.

8. 등록시 시스템 에러사항은 전화로 문의! 조달청: 1588-0800

## 6-2. 필수/추가 등록기관 상세안내

• 한국마사회 http://ebid.kr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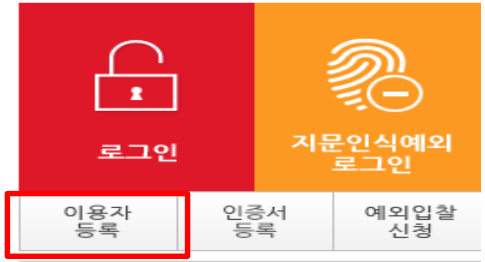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ebid.lh.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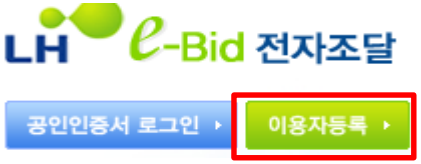


한국수자원공사http://ebid.kwater.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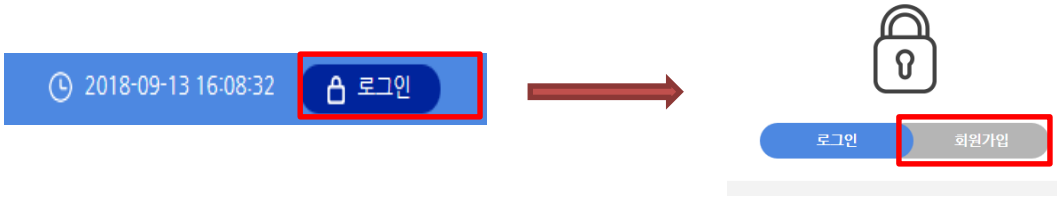


• 한국전력공사 http://srm.kepco.net

국방전자조달 http://www.d2b.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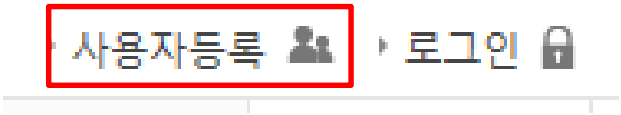


<주의>

• 공공기관 입찰 사이트에 이용자 등록을 할 때는 나라장터에 입력 등록한 입찰참가 등록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 여러기관을 등록할 때는 나라장터부터 등록 해야 한다.

## 6-3. 필수등록 기관 상세안내

• 한국수력원자력 http://ebiz.khnp.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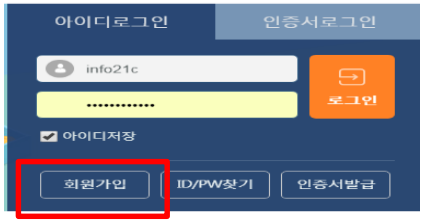


• 한국도로공사 http://ebid.ex.co.kr

인천국제공항 http://ebid.airport.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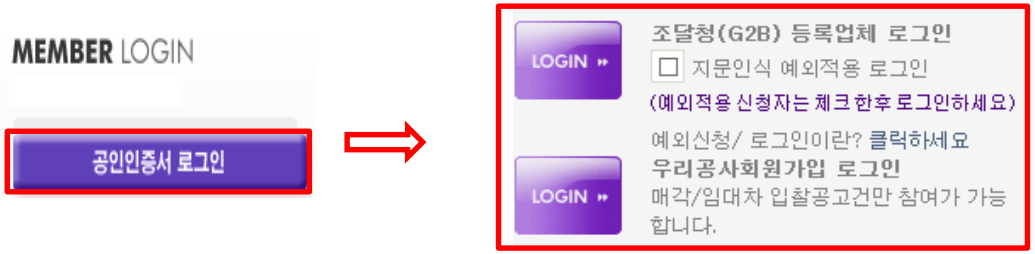


• 한국철도공사 http://ebid.korail.com

• 한국철도시설공단 http://ebid.krnetwork.or.kr

* 사업자 번호 입력 후 인증서 로그인 하여 등록

<Tip>

• 등록시점과 참가가능 여부

나라장터를 비롯하여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마쳐야 참가가 가능하다.

## 7. 분야별 등록신청서 입력사항

| 구분 | 공급물품업체 | 제조물품업체 | 공사・용역업체 | 공급물품・공사・용역업체 | 제조물품・공사・용역업체 |
|---|---|---|---|---|---|
| 필수 입력 항목 | 1. 공통사항<br>2. 대표자정보<br>3. 공급물품<br>4. 접수관련정보 | 1. 공통사항<br>2. 대표자정보<br>3. 공장정보<br>4. 제조물품<br>5. 접수관련정보 | 1. 공통사항<br>2. 대표자정보<br>3. 공사・용역업종<br>4. 접수관련정보 | 1. 공통사항<br>2. 대표자정보<br>3. 공급물품<br>4. 공사・용역업종<br>5. 접수관련정보 | 1. 공통사항<br>2. 대표자정보<br>3. 공장정보<br>4. 제조물품<br>5. 공사・용역업종<br>6. 접수관련정보 |
| 대상 업체 | ㅇ도・소매업체 | ㅇ제조업체 | ㅇ건설, 기술용역, 일반용역업체 | ㅇ도・소매업체, 건설, 기술용역, 일반용역업체 | ㅇ제조업체, 건설, 기술용역, 일반용역업체 |
| 유의 사항 | ㅇ사업자등록증 - 도.소매 | ㅇ사업자등록증 - 제조<br>ㅇ공장 등록 (공장의 업종), 공장 특례, 직접생산확인 | ㅇ면허수첩 또는 업종등록증이 있는 경우 | ㅇ도・소매업을 하면서 면허수첩 또는 업종등록증이 있는 경우 | ㅇ공장과 제조물품이 있으면서 면허수첩 또는 업종등록증이 있는 경우 |
| 기타 | | ㅇ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이 [공급물품]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공급물품]에서 삭제 후 제조물품으로 등록 | | | ㅇ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이 [공급물품]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공급물품]에서 삭제 후 제조물품으로 등록 |
| 제출 서류 |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 전송 후 출력된 시행문 참고 |

<Tip>

**[ 입찰대리인 ]**을 등록하는 경우

• 전자입찰에 참여할 경우 대리인의 신원확인 가능한 개인인증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 입찰대리인의 자격확인 제출서류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가입증명서 중 하나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임원)

## 8. 전자입찰 전체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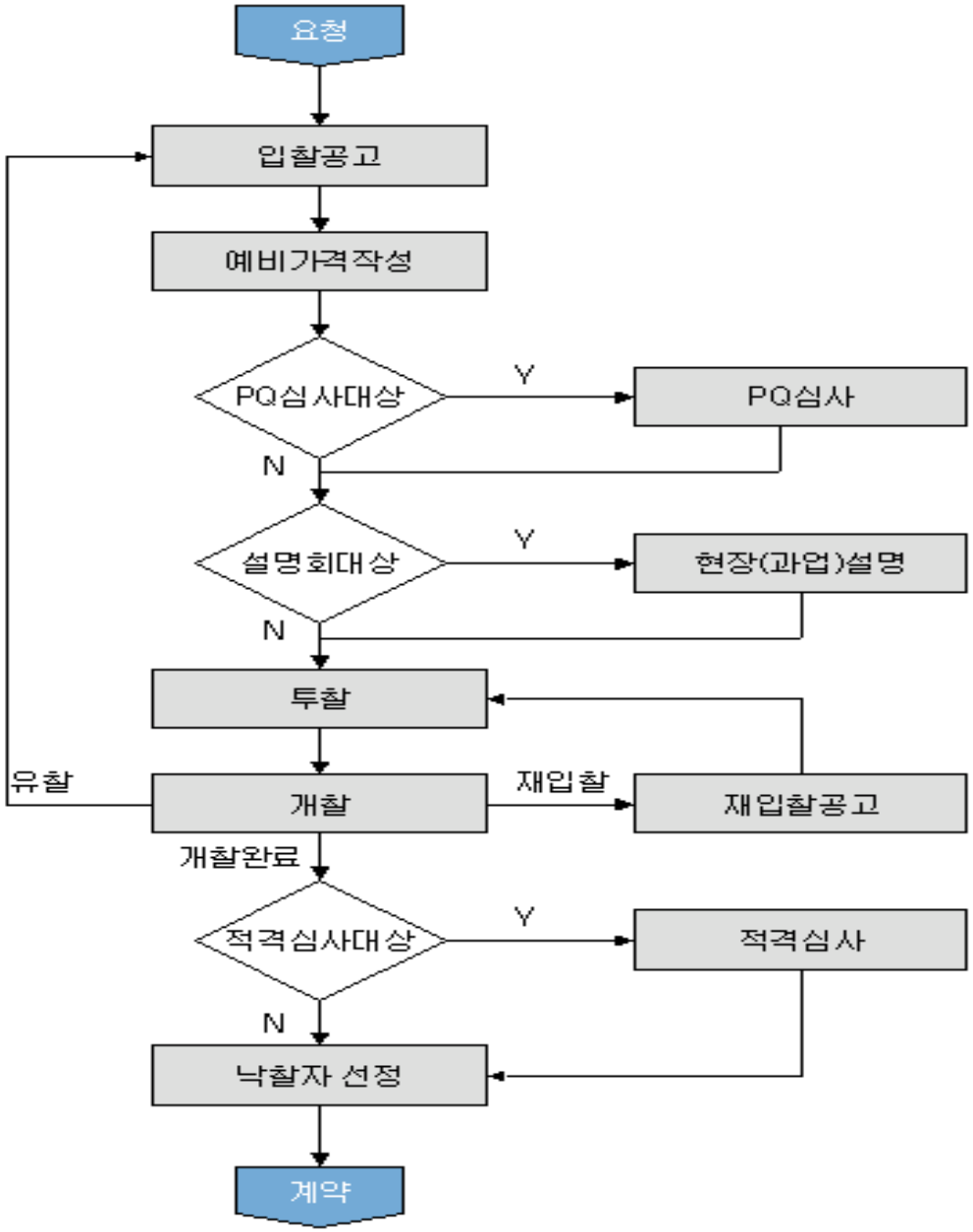


<Tip>

• 오른쪽 표에서 PQ심사대상/ 설명회대상/ 적격심사대상은 해당 공고에만 적용된다.

# [비드큐] 입찰기초 공부하기!

## 3) 입찰과 낙찰의 이해

9. 입찰공고서 항목별 이해하기
10. 공고문의 올바른 이해
11. 입찰의 종류
12. 수의계약 (전자견적입찰)
13. 주요 입찰용어
14. 낙찰자 선정 과정의 예 (전자입찰)
15. 낙찰자 결정방법

# 9. 입찰공고서 항목별 이해하기

<Tip>

1. 입찰공고의 구성항목과 내용이 다소 많지만, 대부분 안내문구이며, 꼭 필요한 부분을 숙지 하면 된다.

- 추정가격과 기초금액
- 참가자격/ 지역제한/ 업종제한
- 공동도급의 가능 여부
-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적용 세부기준
- 입찰마감일시 등

2.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였다고 해서 모든 전자입찰공고에 참가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참가가 가능하다.

3. 입찰초보인 경우는 여러 공고문을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해가 빠르다.

## 입찰공고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보통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공사개요)**
   공사명, 공사내용, 공사기간, 추정가격 및 기초금액 등을 표기

2. **입찰방식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전자입찰 등 입찰방식과 종류, 시간 등을 표기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현장설명의 유무, 또는 설계의 열람 여부 등 표기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면허와 지역제한, 공동수급, 전자입찰 등록 여부 및 기타 참가자격에 관한 내용을 표기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보증금 납부 여부와 방식,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을 표기

6.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의 종류 및 낙찰자(계약자) 선정에 관한 방법 및 관련 법령을 표기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의 이행예정기간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입찰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명시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과 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보통 나라장터 및 발주기관을 통해 제공함을 안내

10.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보충정보 제공처는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에 대한 문의안내처를 표기

11. **전자입찰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입찰서 제출, 견적서 제출, 입찰보증금 등은 보통 전자입찰에 참가한 자체를 제출로 간주

12. **공동계약의 허용여부와 공동계약의 방식** :
    주로 2개 이상 타업체와 공동으로 참가가능 여부와 공도도급에 따른 자격제한 등을 표기

13.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등은 보통 전자입찰 참가를 제출로 간주
    참가자의 변경사항(대표,상호,면허 등)을 확인(변경을 하지 않고 참가하면 입찰무효처리)

# 10. 공고문의 올바른 이해

<Tip>

• 지역

입찰에서 지역은 보통 참가 가능한 사업자의 소재지를 의미합니다. 지역제한이 없는 경우 일정자격만 갖추면 전국의 업체가 모두 참가가 가능하다.

• 지역제한 입찰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를 기준으로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는입찰

• 관내입찰

시, 군 단위로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는 입찰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제도

발주기관이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동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1인 이상은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

• 입찰서의 제출

수주자가 입찰참가를 밝히는 서류로서 기본설계, 상세설계, 조달, 건설, 운영, 견적 등에 대하여 기술한 서류를 전자입찰에서는 투찰과정에서 전자상으로 입력하여 제출(송신)하게 된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 (예> 2010/04/15 18:00)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견적서 제출에 대한 이해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 수의계약 공고이면서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실제로 견적서(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금액을 전자상으로 투찰한 것을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 입찰보증금

입찰 후 계약체결을 보장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입찰금액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을 못할 경우 국고에 귀속 조치함. 대부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있으나 신용불량자, 가격등락이 심하여 계약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을 수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있다.

<추가설명>

입찰보증금은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면제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입찰서를 제출(투찰)할 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함께 제출(전자상의 문서에 동의 절차)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에 5를 내겠다는 내용의 각서)

# 11. 입찰의 종류

<Tip>

- **수의시담** : 지명한 업체와 적절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 서면상으로 계약하는 방식.
- **전자시담**: 수의시담 때 서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전자상으로 가격협상(가격입찰)하는 것을 가리켜 전자시담이라 함.
- **일괄(턴키)입찰**: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 것으로 하는 입찰
- **대안입찰**: 발주처의 설계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입찰
- **단가입찰**: 단가금액으로 보는 입찰
- **제3자 단가 계약**: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

- **경쟁입찰**
  - 일반경쟁: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참가자
  - 제한경쟁: 필요에 따라,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지역, 업종 등을 제한
  - 지명경쟁: 발주기관이 설비/기술/자재/물품/실적 /신용 등을 고려하여 지명한 업체만 참가가능

- **수의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
  (전자입찰에서는 견적서 제출로 경쟁을 통해 주로 도급자를 선정함)

- **총액입찰**
  총액입찰은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서를 토대로 입찰자가 공사에 필요한 수량·단가 등이 기입된 모든 내역을 입찰자의 능력과 책임하에 계산하고, 입찰서를 총액으로 작성하여 실시하는 입찰이다.

- **내역입찰**
  입찰내역서에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이다.

- **부대입찰제**
  공사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 할 부분, 하도급금액, 하수금인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 기재

- **물품/용역입찰 등**
  - 희망수량경쟁입찰: 다량의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수량범위 안에서 수요자의 매수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
  -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규격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 먼저 규격 또는 기술의 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방식
  - 기술(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규격/가격 또는 기술/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고 개찰하여 적격자들의 가격을 개찰

# 12. 수의계약 (전자견적입찰)

◆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전자입찰)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 1. 수의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요약>

- 일반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공사
- 전문건설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 전기/통신/소방/문화재: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인 공사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2. 소액수의계약

소액내자 물품을 수의계약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하며, 소액내자란 조달요청 금액이 계약건당 추정가격 기준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시설공사에서도 적격심사를 보지 않는 수의계약을 편의상 소액수의계약, 또는 수의견적입찰, 소액수의공사 등으로 표기한다.

<Tip>

-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상대편을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전자입찰에서는 견적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규정에 따라 도급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적격심사(수행능력)를 보지 않는 입찰을 의미하기도 한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적격심사를 보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편하다.
- 신규업체는 수의계약 또는 적격심사를 보지 않는 입찰에 참가하거나, 적격심사를 보더라도 실적을 보지 않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낙찰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13. 주요 입찰용어

<Tip>

•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무효)

• **하한가 탈락**

예정가격에 대해 낙찰하한율(예/87.745%) 이하로 투찰하면 순위에 관계없이 입찰무효

• **공동도급계약**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 받아 공동 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 한 도급형태로 결합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뉘어 진다.

• **공동수급 협정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도급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
(전자상으로 등록 입력처리)

• **추정가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 공사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의구분 , 적격심사대상기준의 선택 등 공사규모 별 평가기준을 선택하는 기준이 됨.

• **기초금액**

발주처에서 조사한 당해 공사의 공사금액(관급자재 대가 불포함)으로서 예비가격 작성의 기초금액 및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 기준금액 산정에 활용하고 입찰일 기준 7일전에 일간건설 및 인터넷 (http://www.g2b.go.kr)에 공개함

• **예정가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비공개)으로서 국가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

• **복수예비가격** (조달청수요물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30조)

기초금액 대비 예가변동폭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비공개로 암호화하여 순번을 랜덤하게 정하여 개찰전까지 저장.
입찰참가자는 투찰할때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를 선택한다.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참가자가 투찰할때 랜덤으로 순번이 바뀐다.
(개찰시 다빈도로 선택된 4개의 추첨번호가 예정가격이 된다)

# 14. 낙찰자 선정 과정의 예 (전자입찰)

<Tip>

**•낙찰율(투찰율)**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

**• 낙찰하한율**

예정가격 대비 낙찰 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정하는 백분율(예: 87.745%)

**• 낙찰하한가**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금액으로 낙찰하한가 미만으로 투찰한 금액은 하한가 탈락으로 순위에 관계없이 낙찰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예시]

1. 공고명: 2014년 몽산포 자원봉사센터 신축(건축)공사
2. 공고번호: 20140706129-00
3. 발주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
4. 추정가격: 313,181,818 원
5. 기초금액: 344,500,000 원
6. 낙찰하한율: 87.745 %
7. 예가 변동폭: ±2% (조달청)
8. 복수예비가격 15개 (개찰전까지 알 수 없음/ 번호와 예비가격 순서 불일치)

| 구분 | 금액 (예가변동율 %) | 추첨 횟수 | 구분 | 금액 (예가변동율 %) | 추첨횟수 |
|---|---|---|---|---|---|
| 추첨가격 1 | 350,776,800 (1.8220) | 65 | 추첨가격 2 | 344,048,800 (-0.1309) | 59 |
| 추첨가격 3 | 341,248,000 (-0.9439) | 50 | 추첨가격 4 | 347,490,300 (0.8680) | 42 |
| 추첨가격 5 | 338,722,800 (-1.6769) | 54 | 추첨가격 6 | 338,216,400 (-1.8239) | 74 |
| 추첨가격 7 | 345,747,100 (0.3620) | 51 | 추첨가격 8 | 350,470,200 (1.7330) | 62 |
| 추첨가격 9 | 349,409,200 (1.4250) | 50 | 추첨가격 10 | 342,074,800 (-0.7039) | 66 |
| 추첨가격 11 | 342,936,000 (-0.4539) | 65 | 추첨가격 12 | 346,608,400 (0.6120) | 60 |
| 추첨가격 13 | 348,110,400 (1.0480) | 56 | 추첨가격 14 | 339,859,600 (-1.3469) | 55 |
| 추첨가격 15 | 344,000,500 (-0.1449) | 53 | *빨간색은 참가업체가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 | | |

9. 예정가격: 343,501,000 원 (개찰전까지 알 수 없음)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의 합을 4로 나누면 예정가격이 된다.
10. 낙찰하한가: 301,404,953 원 (개찰전까지 알 수 없음)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 87.745%를 곱하면 낙찰하한가가 된다.
    (낙찰하한가=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11. 낙찰하한가 이상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참가자가 낙찰(또는 **적격심사 대상**)

# 15. 낙찰자 결정방법

<Tip>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입찰금액을 변경, 교환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할 수 없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전자입찰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07-18, 2007. 10. 23)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전자입찰집행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 또는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한다.

- 나라장터 : Bid center > 나의입찰 > 공고명 클릭> 신청서 작성 저장 송신
- 서면 제출 :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나,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제출(모사전송 시 추후 원본 제출)할 수 있다.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 적격심사 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예/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92점,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 평균한 가격이 1원미만인 경우 이를 절상하여 예정가격 결정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불량·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

• 동가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1. 적격심사대상공사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
2. 심사결과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
3.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토록 하여 낙찰자를 결정

# [비드큐] 입찰기초 공부하기!

## 4) 적격심사와 참가범위

16. 적격심사의 이해
17. 적격심사 평가 방법 (시설공사 기준)
18. 입찰을 처음 시작하려면?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의 경우)
19-1. 실적이 있는 기존 업체의 경우?(조달청 기준)
19-2. 실적이 있는 기존 업체의 경우? (행안부 기준)
20. 실질적인 입찰금액 산정하기
21. 실적관리
22. 적격심사 자료
23. 경영상태 평균비율

# 16. 적격심사의 이해

<Tip>

• 적격심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불량·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

• 수의계약과 같이 입찰가격으로만 낙찰자를 경정하는 방식과 달리, 적격심사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가지고, 낙찰 순위를 정한 다음에 1순위부터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심사를 통과해야만, 해당공사/공사/용역에 적합한 도급자(낙찰자)와 발주처가가 계약하게 된다.

• 계약방법이 수의계약, 전자시담, 지명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최저가 낙찰제, 기타 적격심사를 보지 않는 계약방법, 등은 입찰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적격심사를 보는 계약방법은 입찰가격으로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를 보아야 한다.

•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안행부 등 각 발주처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각 심사항목에 따라 적격심사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 적격심사 평가항목은 보통 다음과 같다. (공고에 따라 다름)

1. 입찰가격평가

2. 수행능력평가
   1) 시공경험
      ① 실적
   2) 기술능력
   3) 경영상태
      ① 부채비율
      ② 유동비율
      ③영업기간

3. 시공능력평가액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4. 공동 수급체에 대한 평가

5. 자재 및 인력조달의 적정성(노무비, 제경비, 난이도 계수)

6.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7.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

## 17. 적격심사 평가 방법 (시설공사 기준)

<Tip>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 전문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경영상태와 시공여유율, 시공경험, 영업기간 평가 등이 기록되어 있다.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에서는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 확인서"와 "건설공사 실적확인서"로 구분되어 발급하고 있다.

• 적격심사 기준의 판단은 주로 경영상태와 시공경험 등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경영상태와 실적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련협회에 등록을 하고 재무제표의 제출과 실적신고를 해야 한다.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설비 건설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 제출)되어 <u>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u>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최근 5년(3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방법**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_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u>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u>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 관련협회가 심사분야별.항목별 평가자료를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조달청에 제출된 자료가 없는 업종은 해당 심사분야 또는 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18. 입찰을 처음 시작하려면?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의 경우)

<Tip>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중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될 경우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축적된 **시공 경험**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경쟁입찰에 부치는 제도이다.

• 모든 입찰공고에는 추정가격과 기초금액이 표기 됩니다. 추정가격기준으로 규정이 분류되고, 기초금액기준(지자체:추정가격 기준)으로 실적평가를 한다.

• 보통 투찰마감일 기준 7일전에 기초금액을 발표한다.

• 실적이 없는 시설공사 신규업체의 참가범위

| 구분 | 조달청 | 행안부(지자체) |
|---|---|---|
| 일반건설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수의 계약 또는 실적평가를 하지 않는 입찰 |
| 전문건설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
| 전기, 통신, 소방 | 추정가격 8천만원 미만 | |
| *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 시공경험이 없는 입찰. | | |

• 실적이 없는 일반용역 신규업체의 참가범위

| 구분 | 조달청 | 행안부(지자체) |
|---|---|---|
| 학술용역 | 추정가격 2억 미만 | 지방자치 단체별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참고 ( 비드큐사이트메인화면 > 왼쪽 > 지방자치단체 일반용역 ) |
| 시설용역 | 추정가격 5억 미만 | |
| 정보통신용역 | 추정가격 5억 미만 | |

• 실적이 없는 신규 구매업체의 입찰참가 범위

| 조달청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 행안부(지자체) | 중소기업자간 |
|---|---|---|---|
| 10억 미만 | 10억 미만 | 모두 실적평가 | 10억 미만 |
| 제조, 물품 공통 | | | |

## 19-1.
## 실적이 있는 기존 업체의 경우? (조달청 기준)

<Tip>
1.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적격심사 기준에 맞는 입찰한도액을 알아야 한다.

2.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라면 오른쪽에 표를 보고 내가 참가할 수 있는 입찰의 범위를 확인한다.

3.모든 입찰공고에는 추정가격이 표기된다.

4.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라면, 공고에서 적격심사를 평가 여부를 확인하고, 적격심사를 본다 하더라도, 실적평가를 하지 않는 공고에 참가한다.

5.편의상 조달청과 지자체만 소개합니다. 다른 기관은 투찰율 상세보기 참고.

* 인포 메인화면 왼쪽 "투찰율보기 > 사정율 간편보기인쇄" 참고

- 나의 실적대비 시공경험 평가 만점범위(최소한의 실적)
- 조달청 시설공사 기준 [2014년 9월 1일 개정기준]

| 추정가격 | 실적배수 (일반건설) | 실적배수 (전문건설) | 실적배수 (전기,통신,소방) |
|---|---|---|---|
| 300억 미만 ~100억 이상 | 5년 실적 ≥ 기초금액의 3배 (등급공사는 확인바람) | 5년 실적 ≥ 기초금액의 3배 (등급공사는 확인바람) | 좌동 |
| 100억 미만 ~50억 이상 | 5년 실적 ≥ 기초금액의 2배 (등급공사는 확인바람) | 5년 실적 ≥ 기초금액의 2배 (등급공사는 확인바람) | 좌동 |
| 50억 미만 ~10억 이상 | 5년 실적 ≥ 기초금액의 1배 | 5년 실적 ≥ 기초금액의 1배 | 좌동 |
| 10억 미만 ~3억 이상 | 5년 실적 ≥ 기초금액의 0.5배 | 5년 실적 ≥ 기초금액의0.5배 | 좌동 |
| 3억 미만 ~2억 이상 | 5년 실적 ≥기초금액의 0.5배 | (3억 미만~1억 이상) 5년 실적 ≥기초금액의 0.5배 | (3억 미만~ 8천만 이상) 좌동 |
| 2억 미만 | 2억 미만은 실적평가 없음 | 1억 미만은 실적평가 없음 | 8천만원미만은 실적평가 없음 |

- 실적에 따라 참가범위(낙찰 기대치)가 증가.
- 예를 들어 나의 5년 실적이 12억이고 전문건설이라면
- 5년 실적=기초금액*1배=12억 까지는 낙찰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기초금액이 13억인 공고면 1억의 실적이 미달함으로 낙찰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주의>

실적을 계산해 보는 이유는 실적이 참가자격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순위가 된다 하더라도, 시공경험평가에서 만점을 받지 못하면 1순위가 된다 하더라 적격심사 평가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계약 대상자가 될 수 없다.

## 19-2.
## 실적이 있는 기존 업체의 경우? (행안부 기준)

<Tip>

• 자신의 업종과 면허 그리고 실적을 확인한다

• 그리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참여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자신의 실적에 실적배수를 곱하고, 해당금액이 추정가격(지자체) 이상 이어야 한다.

• 해당 협회에서 "경영상태등의 확인서"를 발급하면 3년 또는 5년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다.

* 인포 메인화면 왼쪽 "투찰율보기 > 사정율 간편보기인쇄" 참고

• 나의 실적대비 입찰참가범위

• 행안부(지자체) 시설공사 기준 [2014년 8월 5일 개정기준]

| 추정가격 | 실적배수 (일반건설) | 실적배수 (전문건설) | 실적배수 (전기,통신,소방) |
|---|---|---|---|
| 300억 미만 ~100억 이상 | 3년 실적≥추정가격*1.8 [1.8배] | 3년 실적≥추정가격*1.8 | 좌동 |
| 100억 미만 ~50억 이상 | 3년 실적≥추정가격*1.7 [1.7배] | 3년 실적≥추정가격*1.7 | 좌동 |
| 50억 미만 ~30억 이상 | 5년 실적≥추정가격*1.0 [1.0배] | 5년 실적≥추정가격*0.8 | 좌동 |
| 30억 미만~ 10억 이상 | 5년 실적≥추정가격*1.0 [1.0배] | (30억 미만~3억 이상) 5년 실적≥추정가격*0.8 | 좌동 |
| 10억 미만 ~3억 이상 | 4년 미만 실적≥추정가격*0.6<br>4년 이상 실적≥추정가격*0.7 | (3억 미만~1억 이상) 4년 미만 실적≥추정가격*0.6 4년 이상 실적≥추정가격*0.7 | (3억미만 ~1억이상) 좌동 |
| 3억 미만 ~2억 이상 | 4년 미만 실적≥추정가격*0.5<br>4년 이상 실적≥추정가격*0.6 | (1억 미만) 4년 미만 실적≥추정가격*0.5 4년 이상 실적≥추정가격*0.6 | (1.5억원 미만) 좌동 |
| 2억 미만 | | | |

1) 먼저 공고문에서 추정가격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적격심사 세부평가 기준표를 확인한다.

2) 평가 기준표에서 요구하는 실적배수(만점기준)을 자기 실적에 곱하여 낙찰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 20. 실질적인 입찰금액 산정하기

<Tip>

1. 공고에서 기초금액을 확인한다.
2. 사정율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3. 공고에서 낙찰하한율을 확인한다.

- 예를 들어,
  -기초금액: 1억
  -내가 선택한 사정율: 0.1234 %,
  -낙찰하한율 87.745%
  100,000,000×(100+0.1234)%×87.745%
  = 1억×100.1234%×87.745%
  = 87,853,278 원 (원단위 미만 절상)

- 사정율을 -0.1234%를 선택했을 경우
  100,000,000×(100-0.1234)%×87.745%
  = 1억×99.8766%×87.745%
  = 87,636,723 원 (원단위 미만 절상)

[각 기관별 복수예가범위 (사정율)]

| 기관명 | 예가변동폭 | 기관명 | 예가변동폭 |
|---|---|---|---|
| 조달청 | ±2% | 한국토지주택공사 | ±2% |
| 행안부 | ±3% | 도로공사 | ±3% |
| 농어촌공사 | ±2% | 수자원공사 | ±2.5% |
| 한국철도시설공단 | ±2.5% | 한국마사회 | ±3% |
| 가스공사 | ±2.5% | | |

- **투찰금액=기초금액×사정율(%)×낙찰하한율(%)**

- 사정율은 기초금액 기준의 백분율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예1) +1.5%인 경우, 1.5% 또는 101.5%로 표현
  예2) -1.5%인 경우, -1.5% 또는 98.5%로 표현

- 낙찰을 위한 분석이라 함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예가변동폭 범위내에서 몇 %를 가감하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예정가격 추측)

## 21. 실적관리

<Tip>

• 보통 실적관리는 시설공사의 경우, 해당 소속협회에서 관리한다.

• 협회 가입은 정식회원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지는 회원가입과, 실적관리 등을 받을 수 있는 단순 정보이용회원으로 구분되어진다.

• 물론 협회회원 및 정보이용회원사들에 대한 자료는 각 협회로부터 G2B시스템으로 자료가 연계처리됨으로 별도로 조달청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

• (구매) 납품실적 인정범위는?
납품실적은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거래실적 또는 수출실적도 인정되며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실적증명서류로 증명이 가능하여야 한다.

• 자기실적이란 업체의 경영상태, 신인도, 시공실적, 기술능력, 신기술활용실적을 말하며, 이들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서 로그인한 후 조달업체업무 - 시설 - 자기실적 - 시공실적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대한설비건설협회,한국소방시설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로 평가한다.

• ‘ 최근5년(3년)간’ 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 시공능력공시액은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자료에 의하며, 최근5년(3년)간 시공경험에 관한 평가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시공능력평가액
정부가 모든 건설업자의 시공경험, 재정적, 기술적 능력 등을 기초로 하여 시공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공시하고 발주자는 이를 참고로 하여 시공을 허용하거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 나라장터에는 아래의 일부 영업정지정보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모든 행정처분 등 정보는 반드시 직접 해당기관에서 확인하여야한다.

- 건설업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02-3496-3830) - 건설업행정처분조회
- 전기공사업 : 한국전기공사협회의(02-3219-0513~6) - 협회사이트
- 정보통신공사업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02-3488-6132~3) - 협회사이트
- 소방공사업 : 소방방재청 업체소재 관할 소방서 행정처분 문의(02-2100-2114)

## 22. 적격심사 자료

<Tip>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반올림 처리방법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면적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적격심사 서류는 언제 제출하나요? ]**

• 조달청은 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회로 부터 통보되었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되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최근 5년(3년)간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시에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최근 5년(3년)간"의 기준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1.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2.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 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3.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 23. 경영상태 평균비율

<질문>

경영상태 평가에 사용되는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답변>

- 경영상태 평가에 사용하는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대한건설협회 등)에서 조사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최종년도 가중평균비율을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 제5호)
- 평균비율은 업종별(예 : 일반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등), 심사항목별(예 :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적용하는 평균비율 및 적용일자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있사오니 관련자료를 다운받아 참고.

<Tip>

- 적격심사에서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등을 평가할 때는 관련 협회에서 조사한 업종별 평균비율과 자사가 협회에 신고하고 관리 되어지는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표에 의해 평가점수를 받는다.

* 비드큐 메인화면 왼쪽의 “경영상태 평균비율” 클릭하여 참고

# [비드큐] 입찰기초 공부하기!

## 5) 실적관리

24. 용역의 종류와 적격심사 서류
25. 물품의 종류와 적격심사 서류
26. 실적관리는 어떻게 합니까?(물품)
27. 신용상태평가서의 필요성(용역/ 구매 필수)
28. 신용상태평가서는 꼭 필요한가요?

## 24. 용역의 종류와 적격심사 서류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Tip>

•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하고 심층 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이다.

• 시설분야용역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유사용역
당해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 신인도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 고시금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일반용역)
4. 기술/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기술용역: 재무제표) 1부
   (조달청 신용평가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능 시 제출생략)
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시설용역)
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신인도 평가관련/ 기술능력 관련 증빙자료 등)

• 기술인력 보유 평가방법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 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에 대해 평가한다.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평가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 일반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용역 중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을 총칭한다.

## 25. 물품의 종류와 적격심사 서류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 적격심사적용기준 (기간 계산 및 심사기준일)

가.적격심사분야별 [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기간계산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처리

- 비율,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신인도 평가항목

1. 품질관리 등 신뢰 정도

| | |
|---|---|
| 가. 고도인증 | 사. 공동수급체 |
| 나. 일반인증 | 아. 중소(제조)기업 |
| 다. 녹색인증 | 자. 정책지원 |
| 라. 여성기업 | 차. 납품지연 |
| 마. 장애인기업 | 카. 불공정거래 |
| 바. 고용장출 | 타. 부정당업자제재 |

<Tip>

• 물품의 적격심사 평가항목

1. 납품실적
2. 기술능력
3. 경영상태
4. 입찰가격
5. 신인도
6. 결격사유

## 26. 실적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조달청 물품적격심사)

<Tip>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직접생산증명확인정보가 변경될때마다 나라장터에 전송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전송된 정보로 자동 갱신. (1일정도 시차발생)

• 물품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 다수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짧은것으로 갱신.

• 자동갱신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여 전에 반드시 변경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납품실적증명

1.국내소재 업체의 납품실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고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별지 제3호,별지제4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 업체의 납품실적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납품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2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 27. 신용상태평가서의 필요성 (용역/ 구매 필수)

[신용상태평가서의 등급적용 입찰의 범위]

| 구분 | 시설공사 | 일반용역 | 물품 |
|---|---|---|---|
| 조달청 | 100억 이상 | **모두적용** | **모두적용** |
| 행안부 (지자체) | 선택가능 | 선택가능 또는 종합평가 | **모두적용** |
| <주의> 단, 상기표는 일반적인 요약이며, 발주기관에서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규정이 해당공고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해당공고에 따라 신용상태평가서의 적용여부에 차이가 있으나, 신용상태평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입찰의 참가범위와 낙찰의 기회가 상당히 확대되기 때문에 유리하다.
- 신용상태평가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공고일 이전에 발급 받은 경우만 인정받는다.
- 1순위 낙찰로 적격심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신용상태평가서가 없으면, 배점에서 최하점을 받기 때문에 평가점수 미달로 낙찰이 무효 될 수 있다.

<Tip>

◆ 신용상태평가서 발급기관

- 한국기업평가(02-368-5500)
- 한국신용평가정보(02-3771-1000)
- 한국신용정보(02-2122-4000)
- 서울신용평가정보(02-514-3000)
- 한국신용평가(02-787-2200)
- 한국기업데이터㈜ (02-3215-2777)
- (주)나이스디앤비(02-2122-2500)

## 28. 신용상태평가서는 꼭 필요한가요?

<질문>

적격심사대상 물품구매입찰에 있어서 경영상태 평가자료인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은?

<답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조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2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창업초기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Tip>

- 신용상태평가서의 발급소요기간은 보통7~10일 정도 소요된다.
- 신용등급평가서는 등급 평가일이 입찰공고일 이전인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심사함으로 반드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 받아야 한다.
- 신용상태 평가서의 발급은 용역과 구매입찰에 주로 필요하다.

# [비드큐] 입찰기초 공부하기!

## 6) 공동도급 및 기타 참가자격

29. 공동도급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

30. 지역의무공동도급이란 ?

31.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등급공사)

32. PQ경쟁입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 29. 공동도급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

•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1.공동이행방식 : 같은 업종끼리 재정 · 기술능력 · 시공경험의 보완

예시) 건축 (또는 토건) 50% + 건축 (또는 토건) 30% + 건축 (또는 토건) 20%

2.분담이행방식 : 업종이 다른 업체와 등록업종(면허)보완

예시) 건축(또는 토건) + 전기(또는 소방, 정보통신)

* 경우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함께 구성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조달청**: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 구성. 최소지분율은 10%이상.

다만,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최소지분율은 5%이상, 구성원수는 10인이내.

**지방자치단체**: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 구성. 최소지분율은 5%이상.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 다만,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는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사업은 해당 용역의 부문/분야 수를 고려하여 구성원수 조정 가능.

•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규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Tip>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방법은?**

전자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때 작성하여 함께 전자상으로 제출한다.

•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평가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항목별 취득한 점수를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30. 지역의무공동도급이란 ?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 1개사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제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한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8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해서는 아니된다.

<Tip>

• 지역제한경쟁입찰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광역시 · 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함으로써,비교적 소규모공사를 당해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제도이다.

# 31.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등급공사)

<Tip>

◆ 등급별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하는 방법은?

별도의 등록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다음과 같이 등급별 시공능력 평가액의 범위를 고시하면 개별 업체는 자기의 시공능력평가금액에 해당하는 등급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 중 토건업체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 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 ❖ 유자격명부경쟁입찰(등급공사)<개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87억원 이상.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 ❖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2017.12.26기준)

단위:미만~이상

| 등급 |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기준) | |
|---|---|---|---|
| |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 1 | 6000억원 이상 | 1700억원 이상 | 1200억원 이상 |
| 2 | 6000억원 ~ 1200억원 | 1700억원 ~ 950억원 | 1200억원 ~ 950억원 |
| 3 | 1200억원 ~ 600억원 | 950억원 ~ 550억원 | 950억원 ~ 550억원 |
| 4 | 600억원 ~ 330억원 | 550억원 ~ 400억원 | 550억원 ~ 400억원 |
| 5 | 330억원 ~ 200억원 | 400억원 ~ 220억원 | 400억원 ~ 220억원 |
| 6 | 200억원 ~ 120억원 | 220억원 ~ 140억원 | 220억원 ~ 130억원 |
| 7 | 120억원 ~ 80억원 | 140억원 ~ 80억원 | 130억원 ~ 80억원 |

# 32. PQ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입찰참가자격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등급별 또는 시공능력공시금액에 의거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PQ심사 신청자격을 부여

신청자에 대한 PQ심사결과 평가분야별 배점한도의 50%이상,신인도를 포함한 종합평점이 60점이상인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단, 최저가 대상공사는 90점이상.

입찰참가적격자는 종합평점 60점이상 취득자를 PQ적격자로 하여 공사의 내용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종합평점(60점)을 30%범위내에서 상향 조정할수 있다.

• 평가방법

사전심사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제4항제3호,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조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Tip>

• **조달청 적용대상공사**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와 일반공종의 공사로 구분하며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교량건설공사
(2) 터널건설공사
(3) 항만공사
(4) 지하철공사
(5) 공항건설공사
(6)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7) 폐수처리장건설공사
(8)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9) 관람집회시설공사
(10) 전시시설

# [비드큐] 입찰기초 공부하기!

## 7) 기타 주의사항

33. 동일가격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방법

34. 입찰무효

35.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36. 낙찰하한율 계산방법의 예

37. 기타

## 33. 동일가격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방법 [조달청]

<Tip>

❖ 전자입찰에 있어서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 결정은?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기초금액의 ±2% 범위 내(행정자치부 기준은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시스템에 의해 작성된다.

• 입찰자는 2개의 추첨번호를 선택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게 되며,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을 하여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게 되며, 이때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하게 된다.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다음과 같다.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1)전자입찰의 결과 낙찰될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력] 제48조의 낙찰자 결정방벙에 따른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2.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설계평가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평가의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3. 동일가격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방법 [지방자치단체]

❖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2) "1)"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등의계산값을 평가등급등의 구간(이상.미만등)에 적용할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점수로 산정한다.

나. 시공비율.업종평가비율 등의 계산시 버림.반올림 등으로 인하여 그 합계(총계) 등이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합계등이 초과되는 경우는 올린 수 중 가장 작은 수부터 버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2) 합계등이 미달되는 경우는 버린 수 중 가장 큰 수부터 올리는 방법 등으로 일치시킨다.

<Tip>

• 선순위 낙찰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34.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Tip>

❖ 입찰의 무효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2.28]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삭제 <2006.5.25>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의2. 삭제 <2010.7.21>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다. 삭제 <2006.12.29> 라. 삭제 <2006.12.29>

7. 삭제 <2009.3.5>
7의2.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의3.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 34.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Tip>

❖ 입찰의 무효라 함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제20종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18.07.03]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1.22, 2014.2.7., 2014. 11. 19., 2016. 1. 15., 2017. 7. 26.>

1.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6.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7.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8.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9.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찰로서 제40조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0. 영 제43조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만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1.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2. 영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입찰 외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전문개정 2010.11.5]

## 35.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로서 법인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선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 이를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나라장터(G2B) 로그인→나의나라장터→업체정보관리->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코너를 통해 상호 및 대표자를 전자적으로 변경 신청한다.

또한 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나라장터에 인증서 추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면허, 인가 등 관계서류를 변경하여야 한다.

❖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로서 관련협회에 의무적으로 회원가입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보이용등록은 반드시 해야만, 적격심사 평가시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유는 해당협회에서 G2B(나라장터)로 자료를 전송하기 때문이다.
정보이용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G2B(나라장터:www.g2b.go.kr →조달업무→시설→자기실적→경영상태)에서 실적, 경영상태, 영업기간 및 시공능력평가액자료가 전송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

❖ 전자입찰에 있어서 당해 입찰이 변경공고 된 경우 입찰서와 함께 공동수급협정서도 반드시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가?

- 전자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되는 변경공고의 경우에는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인지 여부는 입찰자가 변경된 입찰공고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변경공고입찰에서 새로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Tip>

◆ 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기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점수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36. 낙찰하한율 계산방법의 예

<Tip>

❖ 낙찰하한율에 대한 정의

• 낙찰하한율(%)이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적격심사기준』의 적격심사항목별 점수를 산정할때, 입찰가격 이외의 항목(신인도 항목점수 제외 : 신인도 항목점수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항목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임) 점수를 만점이라는 전제하에, 동 기준 제8조(낙찰자결정)에서 정한 적격심사 통과점수(각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다름)가 되게하기 위한 최저 투찰율(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비율)을 의미한다.

• 입찰공고에 따른 각각의 낙찰하한율은 공고에 표기된 것을 이용하거나, 이미 계산되어 있는 표를 참고한다.

❖ 계산방법 (예시)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적격심사통과점수 : 85점)

심사항목별 배점한도 : 신용평가 30점, 입찰가격 70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 평점(점) = 70 - 2 ×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낙찰하한율 계산방법 설명 :

① 신용평가가 만점일 경우 30점 이므로 입찰가격에서 55점만 얻으면 적격심사통과점수인 85점이 됨, 따라서 입찰가격 평점을 55로 할 경우 식은

55 = 70 - 2 ×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이 됨.

② 절대값 안의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경우

(88/100 × 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이 되는데 88/100×100은 약분하여 88이 되고, 입찰가격/예정가격×100은 예정 가격에 대한 입찰가격의 100분율인 투찰율이 되므로 이를 미지수 x로 하면 식은

55 = 70 - 2 × | 88 - x | 로 되어 투찰율 x를 미지수로 하는 1차 방정식이 됨.

③ 투찰율 x를 구하기 위해 식을 풀면

$$-2 \times |88 - x| = -15$$

$$|88 - x| = 7.5$$

$$x = 80.5$$

따라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의 낙찰하한율은 80.5%가 되며, 소수점5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80.495%** 임.

## 37. 기타

❖ [공통]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시스템상에 표시된 공고내용과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것이 우선 적용하는 되는가?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서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낙찰자 선정방법 등 공고내용이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이용약관 제12조제5항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이 우선이다.

• 따라서 시스템상에 낙찰자 선정방법 등을 잘못 적용하여 개찰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첨부 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라 바로 잡아 정당한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입이다.

• 참고로, 입찰공고일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당해 입찰의 공고일자로 한다

•전자입찰의 연기공고

1)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안내

지금까지의 과정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회원님의 입찰을 관리해 드리는 인포의 "분석서비스"를 이용해 보다 많은 낙찰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070-4864-1050

7일 무료사용 신청하기: 1544-6714

* 이용상담 : 1544-6714 * 분석상담 : 070-4864-1050